

연금계좌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글 · 현명훈 선임연구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서 종합과세되는 경우보다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적다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게 세금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세법상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함에 따라 설정되는 계좌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말하며¹⁾, 연금저축계좌는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며, 이때 세율은 3.3%~5.5%(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종합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며,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1.8%(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표1] 연금소득세율 적용 체계

연령 및 유형	세율(지방세 포함)
일반적인 경우: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종신형으로 수령하거나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소득의 원천이 퇴직소득이거나 80세 이상	3.3%

주: 각 항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 적용
자료: 소득세법

※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연금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에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이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 120%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그 인출금의 원천이 퇴직소득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표2]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지방세 포함)
1,200만 원 이하	6.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6.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6.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8.5%
1억 5,000만 원 초과	41.8%

자료: 소득세법

[표1]과 [표2]에 나온 바와 같이 연금소득의 과세율이 종합소득의 과세율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게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는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적용으로 실효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3]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 공제한도 : 900만 원
자료: 소득세법

다음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600만 원, 연금계좌 연금 수령액: 600만 원

- 연금계좌 수령액을 분리과세할 때 세금
 - 1) 국민연금 6,000,000 - 연금소득공제 4,500,000
= 과세표준 1,500,000 × 종합소득세율 6.6% = 산출세액 99,000원
 - 2) 사적연금 6,000,000 × 연금소득세율 5.5% = 산출세액 330,000원
 - 3) 세금 합계 = 429,000원
- 종합과세 선택 시 세금
 - 1) 과세대상 소득 12,000,000 - 연금소득공제 5,900,000
= 과세표준 6,100,000 × 종합소득세율 6.6% = 산출세액 402,600원
- 결과 : 종합과세 선택 시 세금 26,400원 절감

*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은 생략. 세율은 지방세 포함

위 예시에서는 연금계좌 수령액을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과세율이 5.5%가 아닌 3.3%를 적용받는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종합과세 선택에 비해 세금 105,600원 절감). 이렇듯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의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선택하기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友**

1)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도 퇴직연금계좌에 해당됩니다.